|  |  |  |  |
| --- | --- | --- | --- |
|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2005년 11월 15일 국가세무총국 령 제15호 반포, 2011년 12월 19일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하 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라 함) 및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입세 잠정조례》(이하 차량구입세 조례라 함)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납세자는 징수관리법 실시조례 제30조, 차량구입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장소에서 차량구입세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1)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는 납세자는 차량 등록등기지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한다.    (2) 차량 등록등기 수속이 필요없는 납세자는 소재지의 차량구입세 징수 주관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한다.    차량구입세는 차량별 신고 제도를 실시한다.  **제3조**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할 시에는 《차량구입세 납세신고서》(별첨 1 참조, 이하 납세신고서라 함)를 작성하고 하기 자료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사본과 《기동차량 판매 통일영수증》(이하 통일영수증이라 함) 세금신고 쪽은 주관 세무기관이 보관하며 기타 원본은 주관 세무기관이 심사한 후 납세자에게 반환한다.    (1) 차주의 신분증명    ① 중국대륙 주민은 대륙의 《주민신분증》(거주, 임시거주 증명 포함) 또는 《주민호적부》, 또는 군인(무장경찰 포함)의 신분증명 제공  ②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주민은 입경(入境) 신분증명과 거주증명 제공  ③ 외국인은 입국 신분증명과 거주증명 제공  ④ 조직기구는 《조직기구 코드증서》 제공.    (2) 차량 가격증명  ① 경내에서 구입한 차량은 통일 영수증(영수증 쪽 및 관세신고 쪽) 또는 유효증빙 제공  ② 수입 자가용 차량은 《세관 관세납부 전용전표》, 《세관 소비세 대리징수 전용전표》 또는 세관의 《세금 징수·면제 증명》 제공    (3) 차량 합격증명   1. 국산차량은 완성차 출하 합격증명(이하   합격증이라 함) 제공  ② 수입차량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화물수입증명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독관리 차량 출(입)경(境) 팻말 수령(말소)통지서》 또는 《밀수차량, 오토바이 몰수증명서》 제공.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4조** 납세자가 차량구입세 조례 제9조의 감면세 규정에 부합되는 차량의 납세신고를 할 시에는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하기 자료의 원본, 사본 및 칼라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은 주관 세무기관이 심사한 후 납세자에게 반환하며 사본과 칼라사진은 주관 세무기관이 보관한다.    (1) 외국의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 국제조직 주중기구의 차량은 기구증명 제공    (2) 외교인원의 자가용 차량은 외교부서가 제시한 신분증명 제공    (3) 군대 무기장비 주문계획에 속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및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차량은 주문계획 증명 제공    (4) 고정장비를 설치한 비운송차량은 차량 내, 외의 5인치 칼라사진 제공    (5) 기타 차량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세무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제공.  **제5조** 납세신고를 필한 차량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납세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1) 샤시를 갱신하였을 경우    (2) 면세조건이 소멸되었을 경우.  **제6조** 중고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는 차주로부터 《차량구입세 과세증명》(이하 과세증명이라 함)을 요구해야 한다.  차량구입세 면세수속을 처리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 또는 면세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샤시 갱신차량은 최신 심사 확정된 동일 차형 최저 과세가격의 70%를 그 세금계산의거로 한다. 동일 차량이란 국명, 배기량, 차체길이, 무게가 동일하고 차량내부시설이 유사한 등(하동)의 차량을 말한다.  **제8조** 최저 과세가격이란 국가세무총국이 차량 생산기업이 제공한 차량 가격정보에 의거하고 시장의 평균거래가격을 참조하여 심사 확정한 차량구입세의 과세가격을 말한다.  **제9조** 면세조건이 소멸된 차량은 사용연한이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10년 미만일 경우 최신 심사 확정한 동일 차형의 최저과세가격에서 매 1년 만료에 10%를 공제하여 그 세금계산의거로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신 심사 확정한 동일 차형의 최저 과세가격을 그 세금계산의거로 한다. 사용연한이 10년(포함) 이상인 경우 그 세금계산의거는 0으로 한다.  **제10조** 납세자가 신고한, 국가세무총국이 최저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지 않은 차량의 과세가격이 동일 유형 과세차량의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이미 심사 확정한 동일 차형의 최저 과세가격을 참조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동일 차형은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하며 아울러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기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구체방법을 제정하여 본 지역에서 등록가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제11조** 차량구입세 조례 제6조의 “가격외의 비용”이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가격외의 기금, 적립금, 환급 이윤, 보조금, 위약금(체불 이자) 및 수속비, 포장비, 저장보관비, 양질비, 운송적하비, 보관료, 대리징수 금액, 대리 지급금 및 기타 성격의 가격외의 요금을 말한다.  **제12조** 차량구입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일 유형 과세차량의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은 동시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란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의거가 출고가격 또는 자가용 수입차량의 과세가격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제13조** 수입 중고차량,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손상을 입은 차량, 3년 이상의 재고차량, 8만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한 테스트용 차량,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차량은 납세자가 유효증명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가 제공한 통일 영수증 또는 유효증빙에 명기된 가격을 세금계산의거로 한다.  **제14조**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할 때 고정 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은 차량 실태를 검사해야 한다.  **제15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서류를 심사하고 세금계산의거를 확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증명을 발급한다. 과세차량은 과세증명의 세금징수 난에 차량구입세 징수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면세차량은 과세증명의 면세 난에 차량구입세 면세 전용인장을 날인한다.  **제16조**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면세 비준서류를 받기 전에는 먼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7조** 주관 세무기관이 작성하는 차량구입세 납세증빙의 과세액은 위안 자리까지 보류하며 위안 이하의 금액은 생략한다.  **제18조** 주관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가격이 최저 과세가격보다 낮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차량구입세를 징수하는 그 밖에 통일 영수증 가격의 이상한 정보를 채집 및 전달해야 한다.  **제19조** 과세증명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고 차량별로 심사 발급하며 1차 1증 제도를 실시한다. 정본은 납세자가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며 부본은 차량 등록등기수속을 할 때 사용한다.    과세증명은 대여, 개찬, 매매 또는 위조하지 못한다.  **제20조** 과세증명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차주는 과세증명의 보완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세무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이 지정한 공개 발행 신문에 분실성명을 게재하고 《차량구입세 과세증명 교체(보완)발급 신청서》(별첨 3 참조, 이하 증명 보완신청서라 함)를 작성해야 한다.  **제21조** 납세자가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밟기 전에 과세증명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차량구입세 납세증빙 또는 주관 세무기관의 차량구입세 납세증빙 보관쪽과 차량 합격증명, 분실성명에 의거하여 보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 차주가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필한 후 과세증명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원 증명 발급 세무기관에 교체, 보완 발급신청을 제출하였을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차주가 제공한 《기동차량 운행증》과 분실성명에 의거하여 과세증명 정본(부본은 보관)을 심사 발급해야 한다.  **제23조** 차량구입세를 납부한 차량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금환급 신청을 허락한다.    (1) 품질원인으로 차량을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회사에 반환하였을 경우    (2)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하나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에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제24조**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차량구입세 세금환급신청서》(별첨 4 참조, 이하 세금환급신청서라 함)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하기 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회사가 제시한 차량 반환증명과 차량 반환영수증, 과세증명 정본 및 부본 제공    (2) 차량 등록등기를 필했을 경우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회사가 제시한 차량 반환증명과 차량 반환영수증, 과세증명 정본,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가 제시한 차량번호 팻말 말소증명 제공.  **제25조** 품질원인으로 차량을 생산기업 또는 중개판매회사에 반환한 후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일로부터 기납 세금에서 매 1년 만료에 10%를 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한다.  **제26조**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가 차량 등록등기 수속을 거부한 차량에 대해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제27조** 면세조건에 부합되지만 이미 세금을 징수한,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에 대해 주관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한 《고정장치 설치 면세차량 수첩》(이하 면세수첩이라 함) 또는 면세서류에 의거하여 세금환급 수속을 밟는다.  **제28조** 차량구입세 조례 제9조의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이란 아래의 차량을 말한다.    (1) 국가세무총국이 발부한 면세수첩상의 차량    (2) 면세수첩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국가세무총국의 면세 비준을 받은 차량.  **제29조** 주관 세무기관은 면세수첩 또는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한 면세서류에 의거하여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의 면세수속을 필한다.  **제30조** 면세수첩에 편입해야 하는 차량은 차량 생산기업 또는 납세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차량구입세 면(감)세신청서》(별첨 2 참조, 이하 면세신청서라 함)를 작성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이 방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차량합격증명 원본과 사본    (2) 차량 내, 외의 5인치 칼라사진 1매    (3) 차량 내, 외의 칼라사진 전자파일(파일은 50KB를 초과하지 않고 픽셀이 300만 이상인 동시에 차량 생산기업 명칭과 차량사이즈를 명기해야 하되 차량 생산기업만 제공한다).  **제31조** 주관 세무기관은 심사한 면세신청서 및 첨부한 차량합격증명 사본(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 사진 및 전자파일을 급별로 보고한다. 그중,    (1)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매년 3, 6, 9, 12월에 면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가세무총국에 송부한다.    (2) 국가세무총국은 신청 당기의 4, 7, 10월 및 차기 연도의 1월에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을 면세수첩에 편입시킨다.  **제32조** 납세자가 구입한, 아직 면세수첩에 편입되지 않은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은 규정한 신청 기한 내에 먼저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3조** 해외 유학인원(홍콩 및 마카오지역, 이하 유학인원이라 함)이 귀국 봉사 시 그가 구입한 국산 승용차 1대는 세금을 면제한다.  **제34조** 중국에 정착한 전문가(이하 재중 전문가라 함)가 수입한 자가용 승용차 1대는 세금을 면제한다.  **제35조** 유학인원이 구입한, 재중 전문가가 수입한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자가용 차량은 주관 세무기관이 직접 면세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36조** 유학인원, 재중 전문가는 면세신고를 할 때 아래의 상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학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학생 소재국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과학기술부, 중앙인민정부 마카오 주재 연락판공실 선전문화부)이 제시한 유학증명, 공안부서가 제시한 경내 거주증명, 본인의 여권, 세관이 심사 발급한 《귀국인원 국산승용차 구입허가서》 제공    (2) 재중 전문가는 국가 외국전문가국 또는 그 수권단위가 발급한 전문가증, 공안부서가 제시한 경내 거주증명 제공.  **제37조** 홍수예방 및 삼림소방부서가 구입한, 지정 생산회사가 생산한 지휘, 검사, 관리, 홍수예방(경찰), 연락용 특수 사이즈 전용차량(이하 홍수예방 전용차 및 삼림소방 전용차라 함)은 세금을 면제한다.  **제38조** 주관 세무기관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비준서류에 의해 홍수예방 전용차와 삼림소방 전용차의 면세수속을 밟는다. 구체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주관부서는 매년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에 면세신청 제출    (2) 국무원 세무주관부서는 심사한 차량사이즈, 수량, 사용자, 사진 및 관련 증표 양식을 납세자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통지    (3) 주관 세무기관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면세수속을 필한다.  **제39조** 납세자가 구입한 농용 삼륜차는 세금을 면제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직접 면세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신고 차량에 대해 차량구입세 징수관리 보관서류를 설정해야 한다.  **제41조** 주관 세무기관은 차량구입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차량관리기구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제42조** 과세증명의 양식, 규격, 번호는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 및 인쇄한다.  **제43조** 납세신고서, 면세신청서, 증명 보완신청서, 세금환급신청서의 양식, 규격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자체로 인쇄 사용한다.  **제4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이 방법에 따라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45조** 이 방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별첨:    1. 차량구입세 납세신고서(생략)    2. 차량구입세 면(감)세신청서(생략)    3. 차량구입세 과세증명 교체(보완) 신청서    4. 차량구입세 세금환급신청서(생략)   |  | | --- | |  | |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2005年11月15日国家税务总局令第15号发布根据2011年12月19日《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的决定》修订）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征管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以下简称征管法实施细则）和《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以下简称车购税条例）制定本办法。  **第二条** 根据征管法实施细则第三十条、车购税条例第十二条的规定，纳税人应到下列地点办理车购税纳税申报。  　 （一）需要办理车辆登记注册手续的纳税人，向车辆登记注册地的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  　 （二）不需要办理车辆登记注册手续的纳税人，向所在地征收车购税的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  　 车购税实行一车一申报制度。  **第三条** 纳税人办理纳税申报时应如实填写《车辆购置税纳税申报表》（见附件1，以下简称纳税申报表），同时提供以下资料的原件和复印件。复印件和《机动车销售统一发票》（以下简称统一发票）报税联由主管税务机关留存，其他原件经主管税务机关审核后退还纳税人。  　 （一）车主身份证明  　 1. 内地居民，提供内地《居民身份证》（含居住、暂住证明）或《居民户口簿》或军人（含武警）身份证明；  　 2. 香港、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居民，提供入境的身份证明和居留证明；  　 3. 外国人，提供入境的身份证明和居留证明；  　 4. 组织机构，提供《组织机构代码证书》。  　 （二）车辆价格证明  　 1. 境内购置车辆，提供统一发票（发票联和报税联）或有效凭证；  　 2. 进口自用车辆，提供《海关关税专用缴款书》、《海关代征消费税专用缴款书》或海关《征免税证明》。  　 （三）车辆合格证明  　 1. 国产车辆，提供整车出厂合格证明（以下简称合格证）；  　 2. 进口车辆，提供《中华人民共和国海关货物进口证明书》或《中华人民共和国海关监管车辆进（出）境领（销）牌照通知书》或《没收走私汽车、摩托车证明书》。  　 （四）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第四条** 符合车购税条例第九条免税、减税规定的车辆，纳税人在办理纳税申报时，除按本办法第三条规定提供资料外，还应根据不同情况，分别提供下列资料的原件、复印件及彩色照片。原件经主管税务机关审核后退还纳税人，复印件及彩色照片由主管税务机关留存。  　 （一）外国驻华使馆、领事馆和国际组织驻华机构的车辆，提供机构证明；  　 （二）外交人员自用车辆，提供外交部门出具的身份证明；  　（三）中国人民解放军和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列入军队武器装备订货计划的车辆，提供订货计划的证明；  　（四）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提供车辆内、外观彩色5寸照片；  　（五）其他车辆，提供国务院或国务院税务主管部门的批准文件。  **第五条** 已经办理纳税申报的车辆发生下列情形之一的，纳税人应按本办法规定重新办理纳税申报：  　（一）底盘发生更换的；  　（二）免税条件消失的。  **第六条** 购买二手车时，购买者应当向原车主索要《车辆购置税完税证明》（以下简称完税证明）。  购买已经办理车辆购置税免税手续的二手车，购买者应当到税务机关重新办理申报缴税或免税手续。未按规定办理的，按征管法的规定处理。  **第七条** 底盘发生更换的车辆，计税依据为最新核发的同类型车辆最低计税价格的70%。同类型车辆是指同国别、同排量、同车长、同吨位、配置近似等（下同）。  **第八条** 最低计税价格是指国家税务总局依据车辆生产企业提供的车辆价格信息，参照市场平均交易价格核定的车辆购置税计税价格。  **第九条** 免税条件消失的车辆，自初次办理纳税申报之日起，使用年限未满10年的，计税依据为最新核发的同类型车辆最低计税价格按每满1年扣减10%，未满1年的计税依据为最新核发的同类型车辆最低计税价格；使用年限10年（含）以上的，计税依据为0。  **第十条** 对国家税务总局未核定最低计税价格的车辆，纳税人申报的计税价格低于同类型应税车辆最低计税价格，又无正当理由的，主管税务机关可比照已核定的同类型车辆最低计税价格征税。同类型车辆由主管税务机关确定，并报上级税务机关备案。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应制定具体办法及时将备案的价格在本地区统一。  **第十一条** 车购税条例第六条“价外费用”是指销售方价外向购买方收取的基金、集资费、返还利润、补贴、违约金（延期付款利息）和手续费、包装费、储存费、优质费、运输装卸费、保管费、代收款项、代垫款项以及其他各种性质的价外收费。  **第十二条** 车购税条例第七条规定的“申报的计税价格低于同类型应税车辆的最低计税价格，又无正当理由的”，是指纳税人申报的计税依据低于出厂价格或进口自用车辆的计税价格。  **第十三条** 进口旧车、因不可抗力因素导致受损的车辆、库存超过3年的车辆、行驶8万公里以上的试验车辆、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车辆，凡纳税人能出具有效证明的，计税依据为其提供的统一发票或有效凭证注明的价格。  **第十四条** 主管税务机关在为纳税人办理纳税申报手续时，对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应当实地验车。  **第十五条** 主管税务机关应对纳税申报资料进行审核，确定计税依据，征收税款，核发完税证明。征税车辆在完税证明征税栏加盖车购税征税专用章，免税车辆在完税证明免税栏加盖车购税征税专用章。  **第十六条** 主管税务机关对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在未接到国家税务总局批准的免税文件前，应先征税。  **第十七条** 主管税务机关开具的车购税缴税凭证上的应纳税额保留到元，元以下金额舍去。  **第十八条** 主管税务机关发现纳税人申报的计税价格低于最低计税价格，除按照规定征收车购税外，还应采集并传递统一发票价格异常信息。  **第十九条** 完税证明分正本和副本，按车核发、每车一证。正本由纳税人保管以备查验，副本用于办理车辆登记注册。  　 完税证明不得转借、涂改、买卖或者伪造。  **第二十条** 完税证明发生损毁、丢失的，车主在申请补办完税证明前应在《中国税务报》或由省、自治区、直辖市国家税务局指定的公开发行的报刊上刊登遗失声明，填写《换（补）车辆购置税完税证明申请表》(见附件3,以下简称补证申请表)。  **第二十一条** 纳税人在办理车辆登记注册前完税证明发生损毁、丢失的，主管税务机关应依据纳税人提供的车购税缴税凭证或主管税务机关车购税缴税凭证留存联，车辆合格证明，遗失声明予以补办。  **第二十二条** 车主在办理车辆登记注册后完税证明发生损毁、丢失的，车主向原发证税务机关申请换、补，主管税务机关应依据车主提供的《机动车行驶证》，遗失声明核发完税证明正本（副本留存）。  **第二十三条** 已缴车购税的车辆，发生下列情形之一的，准予纳税人申请退税：  　 （一）因质量原因，车辆被退回生产企业或者经销商的；  　（二） 应当办理车辆登记注册的车辆，公安机关车辆管理机构不予办理车辆登记注册的。  **第二十四条** 纳税人申请退税时，应如实填写《车辆购置税退税申请表》（见附件4，以下简称退税申请表），分别下列情况提供资料：  　 （一）未办理车辆登记注册的，提供生产企业或经销商开具的退车证明和退车发票、完税证明正本和副本；  　 （二）已办理车辆登记注册的，提供生产企业或经销商开具的退车证明和退车发票、完税证明正本、公安机关车辆管理机构出具的注销车辆号牌证明。  **第二十五条** 因质量原因，车辆被退回生产企业或者经销商的，纳税人申请退税时，主管税务机关依据自纳税人办理纳税申报之日起，按已缴税款每满1年扣减10%计算退税额；未满1年的，按已缴税款全额退税。  **第二十六条** 公安机关车辆管理机构不予办理车辆登记注册的车辆，纳税人申请退税时，主管税务机关应退还全部已缴税款。  **第二十七条** 符合免税条件但已征税的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主管税务机关依据国家税务总局批准的《设有固定装置免税车辆图册》（以下简称免税图册）或免税文件，办理退税。  **第二十八条** 车购税条例第九条“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是指：  　1. 列入国家税务总局印发的免税图册的车辆；  　 2. 未列入免税图册但经国家税务总局批准免税的车辆。  **第二十九条** 主管税务机关依据免税图册或国家税务总局批准的免税文件为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办理免税。  **第三十条** 需列入免税图册的车辆，由车辆生产企业或纳税人向主管税务机关提出申请，填写《车辆购置税免（减）税申请表》（见附件2，以下简称免税申请表），提供下列资料：  　 （一）本办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车辆合格证明原件、复印件；  　（二）车辆内、外观彩色五寸照片1套；  　　（三）车辆内、外观彩色照片电子文档（文件大小不超过50KB，像素不低于300万，并标明车辆生产企业名称及车辆型号，仅限车辆生产企业提供）。  **第三十一条** 主管税务机关将审核后的免税申请表及附列的车辆合格证明复印件（原件退回申请人）、照片及电子文档一并逐级上报。其中：  　 （一）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分别于每年的3、6、9、12月将免税申请表及附列资料报送至国家税务总局。  　 （二）国家税务总局分别于申请当期的4、7、10月及次年1月将符合免税条件的车辆列入免税图册。  **第三十二条** 纳税人购置的尚未列入免税图册的设有固定装置的非运输车辆，在规定的申报期限内，应先办理纳税申报，缴纳税款。  **第三十三条** 在外留学人员（含香港、澳门地区）回国服务的（以下简称留学人员），购买1辆国产小汽车免税。  **第三十四条** 长期来华定居专家（以下简称来华专家）进口自用的1辆小汽车免税。  **第三十五条** 留学人员购置的、来华专家进口自用的符合免税条件的车辆，主管税务机关可直接办理免税事宜。  **第三十六条** 留学人员、来华专家在办理免税申报时，应分别下列情况提供资料：  　（一）留学人员提供中华人民共和国驻留学生学习所在国的大使馆或领事馆（中央人民政府驻香港联络办公室教育科技部、中央人民政府驻澳门联络办公室宣传文化部）出具的留学证明；公安部门出具的境内居住证明、个人护照；海关核发的《回国人员购买国产小汽车准购单》；  　（二）来华专家提供国家外国专家局或其授权单位核发的专家证；公安部门出具的境内居住证明。  **第三十七条** 防汛和森林消防部门购置的由指定厂家生产的指定型号的用于指挥、检查、调度、防汛（警）、联络的专用车辆（以下简称防汛专用车和森林消防专用车）免税。  **第三十八条** 防汛专用车和森林消防专用车，主管税务机关依据国务院税务主管部门批准文件审核办理免税。具体程序如下：  　 （一）主管部门每年向国务院税务主管部门提出免税申请；  　（二）国务院税务主管部门将审核后的车辆型号、数量、流向、照片及有关证单式样通知纳税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  　（三）主管税务机关依据国务院税务主管部门批准文件审核办理免税。  **第三十九条** 纳税人购置的农用三轮车免税。主管税务机关可直接办理免税事宜。  **第四十条** 主管税务机关应当对已经办理纳税申报的车辆建立车辆购置税征收管理档案。  **第四十一条** 主管税务机关应依据车购税条例第十四条规定与公安机关车辆管理机构定期交换信息。  **第四十二条** 完税证明的样式、规格、编号由国家税务总局统一规定并印制。  **第四十三条** 纳税申报表、免税申请表、补证申请表、退税申请表的样式、规格由国家税务总局统一规定，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自行印制使用。  **第四十四条** 本办法由国家税务总局负责解释。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依照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  **第四十五条** 本办法自2006年1月1日起实施。以前规定与本办法有抵触的，依本办法执行。    　 附件：  1. 车辆购置税纳税申报表  　 2. 车辆购置税免（减）税申请表  　 3. 换（补）车辆购置税完税证明申请表  　 4. 车辆购置税退税申请表 |